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74 발의연월일: 2020. 11. 3.

발 의 자 : 이정문 • 민형배 • 안규백

박상혁 • 신동근 • 김윤덕

고용진 · 이탄희 · 강병원

김상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 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

이러한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의견을 대변할 별도의 청년인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 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 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②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공직후보자 등"은 "청년인 재"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
	•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u>구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u>
	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5
	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
	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
	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
	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
	집 ·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u>장 및 시·도지사"로, "공직후</u>
	보자 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
	보의 수집 범위・절차 및 수집
	<u>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u>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